

제392회국회
(임시회)**국 방 위 원 회 회 의 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12월22일(수)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43)
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85)
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87)
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56)
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30)
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37)
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31)
8.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26)
9.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11)
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10)
1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3)
1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09)
1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47)
1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63)
1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29)
1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40)
1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30)
18.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28)
19.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458)
2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73)
21.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2591)
2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81)

상정된 안건

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3) 2
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5) 2
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7) 2
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6) 2
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30) 2
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7) 2
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31) 2
8.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26)	2
9.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11)	2
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0)	2
1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3)	2
1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9)	2
1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7)	2
1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63)	2
1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9)	2
1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0)	2
1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30)	2
18.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8)	2
19.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8)	2
2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73)	2
21.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1)	2
2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1)	3

(09시38분 개의)

○소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22건의 법률안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3)
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5)
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7)
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6)
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30)
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7)
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31)

8.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26)

9.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11)

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0)

1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3)

1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9)

1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7)

1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63)

1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9)

1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0)

1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30)

18.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8)

19.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8)

2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73)

21.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1)

2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1)

○**소위원장 성일종** 의사일정 제1항부터 22항까지 2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께 심사가 필요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2건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만 별도의 내용인 의사일정 1항에 대해 먼저 심사하고 이후 동일한 내용인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작성되어 있는 소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 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은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과거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상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만을 상이등급 제7급으로 인정하던 것을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장해를 입은 남성까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만을 상이등급 제7급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아 같은 기간 사이에 퇴직한 남성의 경우에는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하고 상이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상이등급을 인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바 개정안은 남성과 여성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참고로 같은 기간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를 갖고 전역한 남성 세 분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 역시 상이등급 적용 대상을 여자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박재민** 개정안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김병주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도 요새는 남자가 똑같이 하는 걸로 승인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강대식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한기호 위원** 실제로 지금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성들은 얼마나 있었어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위원님, 4쪽의 참고자료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여성은 하나도 없어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남성 6명이 신청했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외모의 흉터라는 것이 노출된 부위냐 노출되지 않은 부위냐 어디 있느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이건 누가 심사해요?

○**국방부군인재해보상과장 장영재**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장 장영재 서기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내부 위원과 의료·법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게 되고요. 사회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위기 때문에 머리, 얼굴, 목 부분이 해당되고요, 팔과 다리는 제외가 됩니다. 상이등급 7급에 해당이 됩니다.

○**한기호 위원** 팔과 다리는 제외예요?

○**국방부군인재해보상과장 장영재**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경찰·소방 공무원은 어때요?

○국방부군인재해보상과장 장영재 경찰·소방 공무원도 남녀 차별을 두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군인 재해보상법 상이등급 체계가 조금 다르기는 해서 등급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남녀 차별을 두고 있는 법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만 지금 여기 과거의 한 기간 동안만 이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군인재해보상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94년도에 시행령을 도입하면서 그 당시의 법감정 그다음에 여성이 사회적으로 좀 더 제한을 받고 피해를 받는다는 인식 이런 것 때문에 여성만을 명시했고요. 2006년 시행령에 여성을 사람으로 개정하면서 남자를 포함하게 됐는데요. 그때 경과 규칙을 두어서, 94년부터 2006년 사이의 남성도 해당된다는 조항을 두었어야 되는데 그 부칙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 기간 동안의 남성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 12년 기간 동안에, 94년부터 2006년까지 기간 동안에 이런 데 대한 것을 제기한 남성이 있었었나요?

○국방부군인재해보상과장 장영재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해서 3명이 승소를 한 상황입니다.

○한기호 위원 몇 분이나?

○국방부군인재해보상과장 장영재 세 분입니다.

○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차관님,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7급이라고 하면 상이등급이 어느 정도예요? 흉터가 눈에 보일 정도로 흉한가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제가 참고자료가 있는데 한번 중요한 것만 읽어 보겠습니다.

“외모에 뚜렷한 흉터”란 다음과 같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크기를 말한다. 얼굴의 경우에는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크기 이상의 흉터,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없어짐. 안면부의 경우에는 계란 크기의 흉터, 길이 5cm 이상의 선 모양의 흉터 또는 100원짜리 동전 크기 이상의 조직 함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굉장히 크네요. 그러면 7급으로 인정을 받으면……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잖아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못 받았던 거지요.

○소위원장 성일종 이분들이 제외됐었잖아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94년~06년간.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7급으로 인정을 받으면 상이연금 대상자도 회복이 되나요, 연금 대상자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상이 7급을 받고 연금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것도 절차에 따라서.

○소위원장 성일종 지금 남성은 이것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상이등급에 의한 연금 대상자도 그동안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 법안이 통과돼서 혜택을 보게 되면 상이연금의 대상자로도 들어가지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전에 못 받았던 연금은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줘야 되나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소급해서 계산해서 당연히 줘야 됩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그 대상자가 총 얼마예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아까 소송으로 승소하신 분이 3명 지금까지 식별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흉터 이런 것을 해 드려야 되는 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국방부군인재해보상과장 장영재 저희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전에는, 94년부터 06년 사이에는 저희가 심사를 하기 전에 전화 상담을 받고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 흉터를 입은 남성이 상이등급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출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소위원장 성일종 혹시 얼마나 될지 그것은 추계를 안 해 보셨나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현재로서는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 것이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가 홍보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더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아까 차관님 말씀하실 때 7급이라고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동전 크기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굴에 동전 크기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흉터 아닌가요, 그게?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소위원장 성일종 그런데 왜 7급만 해 주지?

이것을 8급이면 8급…… 실질적으로 사람이 남자든 여성이든 살아가면서 군에서 사고로 흉터가 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7·8급을 따질 게 아니라, 7급을 따질 게 아니라 다 치료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금이야 7급부터 준다 하더라도?

연금은 몇 급부터 줘요?

○국방부군인재해보상과장 장영재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 대상자입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니까 7급까지 연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8급이 됐든 9급이 됐든 얼굴에 흉터가 있으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다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원하면 그것은 다 수술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지금 질문하시는 요지가 7급이 낮다, 한 5급쯤 돼야 되지 않냐……

○소위원장 성일종 아니, 7급까지 주는 것은 연금에 해당되니까 7급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8급이나 9급은……

○국방부차관 박재민 등급 자체가 7급까지 있습니다. 최하 등급인 것이지요.

○소위원장 성일종 최하 등급이 7급이지요? 그러면 최하 등급을 못 받은 사람이……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동전 크기의 흉터 같은 경우 있으면 7급으로 해서 흉터의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동전 크기라면 굉장히 큰 거예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아까 제가 읽은 시행규칙에 100원짜리 동전 크기 이상의 조직 함몰이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 50원짜리 정도의 함몰이 있으면 7급도 해당 안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거지요?

○소위원장 성일종 그렇지요. 연금에 대해서 7급까지 주는 것은 동의를 하겠는데 흉터가 작더라도 군에서 치료는 다 해 줘야 한다, 연금은 안 주더라도.

지금 그것을 안 해 주고 있나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법무관리관입니다.

군에서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군 의료 체계에 따른 치료는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의 흉터라는 것은 제거가 안 될 정도로 영구적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장해등급으로 판정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아,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치료는 성형수술이고 뭐고 다 해 주고 있다, 그런데 영구히 남는 것에 대해서만 해 주겠다는 건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흉터가 제거가 안 되고 남기 때문에 장해등급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지금은 성형수술이 좋으니까 그런데 오래전에, 한 20년 전이고 얼마 전에 상처가 났던 분들도 지금 와서 요청하면 해 줄 수 있나요? 법을 정비할 때 그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해야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이 재해보상법 차원에서는 연금 체계, 그러니까 상처를 입고 전역하신 분의 예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적용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위원님 지금 말씀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 정부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 재해보상법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든 누구든 간에 예를 들어 60년대에 치료받고 상처가 남았는데 그때는 성형수술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흉터가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것을 레이저로 박피를 하든 또 치료를 더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소위원장 성일종 그렇습니다.

○국방부차관 박재민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재정 부담이나 정책의 시행 방안이나 시행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또 형평성 이런 문제도 검토할 게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인사혁신처도 그렇고 논의가, 연구가 좀 더 필요하고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내가 볼 때는 이 법을 통과할 때 7급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작은 상처라도 국가를 위해서 군에서 복무하다가 흉터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의 수술을 좀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법을 정비할 때 그것까지도 다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 말씀은 그것은 별도 검토사항이라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소위원장 성일종 별도 검토사항이라고 해 놓

고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까?

○국방부차관 박재민 위원님 또 이렇게 소위에
서 논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소위원장 성일종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으로라도 그것을 좀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그러니까 그것은 치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 의료 체계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그래도 흉터가 남았을 경우에 상이
등급을 인정해서 그에 합당한 연금을 평생 지원,
그게 군인 재해보상법입니다. 뒷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옛날 분들 치료를 다시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것은 다른 법률을 검토해야 되고 법체계도 그렇
고 여러 가지,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지금 머리에 잠깐 생각나는 것도 이제 검토해
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법 시행령에
정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
법대로 필요하고, 기동민 의원님 입법해 주신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필요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좀 추가적인 검토
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 주세
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다른 법이면 어떤 법인지 검
토를 해 가지고 시행령에 반영을 해 줄 수 있으
면, 시행령은 부서에서 조정할 수가 있으시잖아
요.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이게 오늘 통과되면 그 법은 언제 보고하실 거
예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하겠
고요.

위원장님, 이 법은 지금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저희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 여기 자료 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2019
년·2018년에.

○소위원장 성일종 아니, 저는 이 법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법을 통과하다가 보니
그러면 7급까지 들어오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사람이 원했었을
때 그분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 제
기를 하니까 차관님 말씀은 다른 법으로, 이것은
연금과 관련되는 법이고 치료에 관련된 것은 다
른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시행령으로 할 건지 법으로 할 건지 그걸
검토해서 국회에 보고를 하시라는 거지.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
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김진표 위원님 주실 말씀 있
으면 주시지요.

○김진표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없으세요?

○김진표 위원 예.

○소위원장 성일종 이것은 다 마무리됐고, 다음
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소위 자료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같은 내용이므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
정법률안입니다.

6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상이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을 수급
할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미 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
는 자녀의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25세 미만
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법 역시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
에 대해 인사혁신처 역시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7쪽입니다.

개정안은 제37조제3항을 신설하여 연금을 수급
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25세로 확대하되, 자
녀 등의 생활능력이 인정될 경우에는 상이유족연
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능력 인정’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유족 중 배우자, 부모 등의 경우에는 생활능력
인정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
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어 쉽지 않은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유
족연금을 지급할 때 생활능력 인정 여부를 고려

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생활능력 인정 여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입니다.

또한 부칙에서 적용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법률 시행 당시 기존에 자녀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개정법률 시행 이후 자녀 유족연금을 새로이 지급받게 되는 사람과 같이 유족연금 수급권을 25세 미만으로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점에서 적용례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 가능 연령을 확대한 국민연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해당 내용을 개정할 당시 기존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개정내용이 적용되도록 적용례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2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개정안 역시 퇴역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자녀 및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 가능 연령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연령 규정도 함께 개정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개정법률 시행 당시 기존에 자녀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25세 미만으로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박재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전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강대식 위원 강대식 위원입니다.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한 보답이자 예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들이 지난 8월 기준으로 해서 25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강대식 위원 개정안에 따른 향후 20년간 추가 재정소요 역시 85억 정도 이렇게 비교적 부담이 크지 않다고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강대식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해외 사례에서 저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이나 유족 중에 전업 학생일 경우에는 25세까지 최대한 연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 맞습니까?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강대식 위원 국가가 우리 군인의 가족을 챙기지 않는다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앞으로 그 누가 목숨 바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싸우겠냐, 이에 대해서 차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강대식 위원 저도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예.

○김병주 위원 지난번에 천안함 유족 가족 중에 배우자분이 암인가 뭐로 사망을 하고 그 자체분들이 보니까 고등학교인데 19세까지 유족연금이 승계가 되고 그 이후에 안 되니까 대학 가고 아주 막막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 이러한 논의가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많이 논의가 됐었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졌었는데 마침 이 법이 발의가 돼서, 저는 25세까지 확대를 해야 실제 그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대학을 마치고 사회생활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 개정법률안에는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 의견 주셨지요?

○한기호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차관님, 하나만 여쭙어볼게요.

25세까지 하자는 것은 어떤 근거예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위원님, 6쪽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이게 사실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은 2016년에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거에 따라

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도 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에서 25세로 올린 것은 이제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대학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취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25세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김도읍 의원님이 내주셨지만 25세에 대해서 ‘어떤 이유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있다기보다는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다른 법하고 균형을 맞추셨다는 거네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소위 자료 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박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8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군응급처치보조인’의 자격을 인정하고 이들이 전시·사변 등의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시, 재난 등 특수 상황하에 군의 응급환자 처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의 규정에 군응급처치보조인 규정

을 신설하면서 국방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토록 하고 있으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처치는 응급환자에 제공되는 의료행위로서 전문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국방부장관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자격을 인정하여 활용할 경우 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응급처치보조인 규정을 삭제하고—19쪽입니다—제11조의2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 응급조치 교육을 이수한 군인이 군시설 등 한정된 영역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의료행위로서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의 적용 상황, 대상 및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초안이 22쪽 참고자료3에 제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박재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면 최소한 총 약 한 343시간의 과정 이수가 필요한데 국방부에서는 일반의 무병 전투현장 응급처치 자격인증 과정이 2급 응급구조사 정도인데 이 교육 과정 시간의 약 4분의 1 수준인 78시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던데요. 만약 이 정도 교육이면 전시라든지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처치가 충분하게 가능하나요, 차관님?

○국방부보건의료정책과장 유희승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응급구조사 2급이 하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시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만 교육시키기 때문에 78시간 정도면 저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이 정도만 해도 뭐 응급처치라든지 위급한 상황에서는 충분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그러면 국군의무사령부에서 2021년부터 전 전투원 대상으로 구급법을 대체해서 전투부상자 처치 교육체계로 전환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

면 전투부상자 처치란 또 뭐고 그다음에 무슨 교육 과정을 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이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방부보건의정책과장 유희승 저희가 이 법이 개정되면 우선 의무병부터 이 교육을 시켜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발전시켜서 분대 단위의 응급처치요원 한 명씩을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육군에서 지금 준비 중인 그 교육은 분대 단위 응급처치요원을 양성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아, 연결되어 있어요?

○국방부보건의정책과장 유희승 예.

○강대식 위원 예.

○국방부차관 박재민 그리고 위원님, 이 법을 개정을 해 주시면 가장 큰 문제가 지금은 무자격자가 하고 있던 것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물론 군 내에서 특수한 상황에 민간의 자격증도 없이 하는 거지만 그래도 법적 근거를 가진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저는 일단 이 법은 적극 동의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거 갖고도 좀 부족한 면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전시가 되면 장병들이 다쳤을 때 군의관은 대대에 한 명밖에 없고 의무병이나 이런 인원들이 사실은 응급조치도 하고 필요하면 주사도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법적인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전시에 아주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법은, 응급조치하는 이것은 아주 맞다고 보고.

사실은 전시에 그런 법들이 있잖아요. 전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의무병들도 이제 기본적인 주사를 놓는다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하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 검토하고 있나요?

○국방부보건의정책과장 유희승 이 법이 개정되면 기초적인 그런 주사, 시술 같은 것도 가능하게 돼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병주 위원 본 위원이 군에 있을 때 미국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미국 교육사령부도 직접 가 보니까 미국은 신병교육을 한 12주 정도 받는데

신병교육대 목표가, 다치게 되면 피를 많이 흘리게 되지요. 그러면 제가 B형이라고 하면 B형 전우한테 내 혈관을 찔러서 바로 피를 수혈할 수 있는 것까지 신병교육대 훈련을 하는 목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아프간전이든 이라크전이든 걸프전에서든 최소 희생을 한 상태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의료법이 강화가 돼서 지금 중대별로 의무병이 한 명씩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훈련조차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전시에 참 큰 문제인데.

군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정부입법안으로, 평상시에 계속 하는 것보다도 교육훈련이라든가 기본적인 게 평시에 훈련이 돼야 전시에 되는데 평시는 그런 것들의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 아주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정부입법으로 구체화해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지금 20쪽에 보시면 그림 중에 ‘후송에 대비한 정맥라인 확보’ 이런 것들이 간단한 주사를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기초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저희가 아까 강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신 78시간 안에 포함시켜서 교육을 시키겠고요.

그리고 그 시행령 뒤쪽에 저희가 시행령안을 마련해 뒀는데—22쪽입니다—거기에 있는 그런 조치,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지금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더 발전시킬 사항이나 더 필요한 사항들도 저희가 더 연구를 하면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런 것들도 보완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 되면 일단 시행령이라도 좀 더 구체화하고……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시행령 갖고 또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의무병 이런 문제는.

또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부입법으로 좀 제기를 해서 전시에 우리 장병들의 목숨이, 응급 그 충격을 다루는 시급이기 때문에 스스로 분대 내에서도 소대 내에서 하지 못하면 사실은 골든타임을 놓치잖아요, 전시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평시도 훈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십니까?

차관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군의 의무병들은 이런 교육을 안 받았던 거예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그러니까 교육은 받았는데 이제 자격이 무자격자로서 의료행위를 한 것이 사실은 우리 군의료에 굉장히 오랫동안……

○소위원장 성일종 아니, 의무병이라고 하는 병과에 그것을 부여하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소위원장 성일종 그래서 가서 의무병으로서 교육을 받았는데 법적 근거 없이 그동안 해 왔다?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위원님……

○국방부보건정책과장 유희승 그 의무병이 교육을 받는데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것은 응급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교육하고 실행하도록은 하지 않았습시다. 기본적인 구급법이라든지 지혈대라든지 운반이라든지 이런 것만 의무병이 교육받고 실행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 꼭 필요한 무슨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것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고 근거가 생기면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소위원장 성일종 뭐 주사 다 놔잖아요. 내가 군대 소대장 했잖아요. 다 주사 놓고 다 했는데……

○국방부차관 박재민 위원님, 그래서 과거부터 그게 무자격…… 이게 직역 갈등 요소입니다, 여기 전문위원도 검토를 그렇게 해 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박성준 의원님이 하신 것도 국가자격증을 국방부에서 이렇게 교육을 제대로 시킬 테니까 주사는 거였는데 그게 직역 갈등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오랫동안 반대해 왔던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약제병도 자격증이 없는데 약을 이렇게 조제를 해서 준 다든지 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해 왔습시다. 과거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그것을 저희가 점점 고쳐 가면서 합법화하고 정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 30년 전에는 의무병이 간단한 주사나 예방주사 또 간단한 감기약을 제

조했는데 그것이 법에 위반되어서……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2000년 이후에는 그것을 전혀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의무병은 편제는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약 하나도 제조 못 해 주고 군의관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있어도 어떨 때는 군의관이 없으면 못 하고 예방주사도 못 놓으니까 그런 소요가 또 병원에 하나까 참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이제는 평시에 훈련하고 해야 전시에 되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성일종 아니, 이 법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국방부는 뭐 했어요, 그러면?

○국방부차관 박재민 그러니까 말씀드린……

○소위원장 성일종 아니,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 추세 같은 것도 그러면 못 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국방부 그동안 15년 동안 뭐 했어요? 옛날에는 오히려 의무병들이 이상한 수술도 하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더 컸었잖아요. 그런데 15년 동안 주사도 못 놓게 하도록 이 법이 정비가 안 되었다고 그러면……

○국방부차관 박재민 위원님,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앞으로 의무병으로 하여금 코로나 예방주사를 놓게 한다든지 그렇게는 못 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이고 응급한 상황에 아주……

○소위원장 성일종 긴급할 때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방부는, 박성준 의원님 안 18쪽에 보시면 군응급처치보조인이라는 어떤 자격증 이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 이견으로 또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었고 이번에 그 자격증은 안 하는 대신에 이렇게 법적 근거를 주는 방향으로 부처 간 합의가 되었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조정도 해 주시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 가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심사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6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선춘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관’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다음의 1쪽에서 군무원인사법, 윤주경 의원 대표발의한 안하고 한기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 2건을 일괄해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의 오른쪽 상단입니다.

현행 제30조 규정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강등된 경우에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 우선 승진 임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본인이 동의해서 강임된 경우에는 이후에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우선 승진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서 우선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무원의 경우에는 격오지 근무 등 비선호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기 위해서 강임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인사 교류를 회피하는 수단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에서도 개정안과 같이 본인이 동의해서 강임된 경우에는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서 우선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은 한기호 의원안에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한기호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7조 2항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대상 요건으로서 9호에서 ‘복무 중에 군인사법 제37조제3항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이라고 이렇게 요건을 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신체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군인에게 모범이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 오른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개정안과 같이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 요건을 확대할 경우에는 다른 군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의3제2항을 보면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구체적이고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2항 제1호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여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행위’, 2호에서는 ‘희생을 감수하고 솔선수범하여 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드높인 행위’, 3호에서는 ‘작전수행 중 큰 전공을 세운 행위’, 4호에서는 ‘부하 또는 동료 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본인의 희생을 무릅쓴 행위’ 등으로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대로 시행하더라도 인사혁신처의 우려와 달리 오남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부칙과 관련해서는 윤주경 의원안, 한기호 의원안 모두 군무원의 채용 또는 임용에 관한 인사규정입니다. 그래서 인사규정과 관련해서는 군무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박재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전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차관님, 여기 군무원 강임된 경우, 저도 군대 생활을 하고 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위원님, 이걸 그겁니다.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강임된 경우인데요.

○한기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5급이었다가 6급으로 내려갔다……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원도에 근무하시던 분이 서울의 같은 직렬에 5급 자리는 없고 6급 자리가 있다, 나는 저기로 전보를 희망한다 할 경우에 본인이 원해서 강임되어 가는 수가 있는데…… 검토의견을 써 주신 요지가 그겁니다, 악용되지 않겠느냐. 조직 개편으로 자리가 없어졌을 때 6급으로 할 수 없이 강임되었다가 다음번에 승진 자리가 생기면 우선 5급으로 올려 줘야 된다는 게 원래 현행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조금 전의 그 케이스는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경우는 제외시키는 것이 윤주경 의원님 발의하신 법의 취지입니다.

○**한기호 위원**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 의해서 인사 할 때 국방부에서 논란이 있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윤 의원님이 발의했겠지.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국방부군무원정책과장 김공현** 국방부 군무원 정책과장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 같은 경우 승진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보직 조정을 하려고 할 때 자기는 강임하더라도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본인이 강임에 의해서 희망,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국방부에 5급으로 전방에 있다가 6급으로 왔는데 5급 자리가 비었으면 이 사람은 우선으로 승진시켜 주는 거예요?

○**국방부군무원정책과장 김공현** 기존 규정 같은 경우에는 우선으로 승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승진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박재민** 조금 형평성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불만을 제기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여기 심사자료 4쪽에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개정안과 같이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벌써 개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기호 위원** 이것도 갈등 요소가 또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방부차관 박재민** 아, 개정을 하더라도요?

○**한기호 위원** 예.

강임된 본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다시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그곳에 오랫동안 있으면

서 다음 승진을 기대하고 있던 분들이 또 이번 때문에 바뀔 수가 있으니까……

○**국방부차관 박재민**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위원님.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에 5급이었던 분이 서울 지역에 6급 공석이 생겼으니까 6급이라도 오겠다고 했는데 한 1년 후에 서울 지역에 5급 자리가 생기면 이 사람을 먼저 승진시켜 주면 서울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은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대식 위원** 일반 행정직들도 예를 들어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전입을 하려고 하면 한 계급, 한 직급 강등되어서 자기가 원해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승진 요인이 똑같이 적용되지 지금 군인사법처럼 승진 자리 요소가 있다 하면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아 넣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6급에서 7급으로 한 직급 강등되어 왔다 하더라도 그 직급하고 똑같이 인사규정에 의해서 진급을 하지 자리가 넘어왔다고 해서 이 사람을 우선적으로 진급시켜 주는 경우는 없는 것이거든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맞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법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 말씀 더 주시지요.

○**김병주 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병기 위원** 저는 큰 건 아니라서……

7페이지에 보면 인사혁신처에서 무슨 근거로 이런 안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이게 야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게 안으로서의 값어치가 있어요? 아니, 뒤의 인사 시행규칙 같은 것 보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게 무슨 경력을 확대하고 이런 얘기를 갖다가 댄니까?

나는 이것은 꼭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법상이나 이런 데서도 잘 설명해서 가지고 걸리지 않도록 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김병주 위원**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이 아주 좋은 법안을 발의했는데 실제 군무원 채용할 때 신체장애가 된 군인은 채용도 하지만 또 사실 전투나 작전의 유공자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적극 동의하고 사실 인사 혁신처에서 공정을 따지는데 공정보다도 전투나 이런 데서 공이 있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공정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 백번 동의합니다, 백번.

○**한기호 위원** 실제로 이 법에 이렇게 된 게 과거에 우리가, 여기도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하고 신체장애인이 되어서 취업을 한 경우는 지금까지 5명밖에 없어요. 이게 장애인이 되어야지만 시켜 준다고 하면 실제로 적은 극소수의 인원만 되기 때문에 아까도 전문위원님 보고하신 것처럼 여기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분명하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엄격하게 정해 놔었으니까 이렇게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여기서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군에서 혁혁한 공이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훈장을 받았다는가 그런 경우는 사실은 군에서 근무를 잘했으니까 군무원으로 전환할 때도 가산점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군무원이라는 것은 군조직에 있기 때문에 군의 경력을 잘했던 사람을 채용하면 훌륭한 군무원을 하니까……

○**한기호 위원** 그것도 들어가요. 여기 3항에 ‘작전수행 중 큰 전공을 세운 행위’ 그러면 이게 사실 훈장을 받거든요.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작전행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업무를 잘해서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훈장 정도로 받는다는가 아니면 대통령 표창 이상의 어떤 공적이 있다면 거기에 인정을 해 줄 필요가 사실은 있지요.

○**한기호 위원** 훈장이나 표창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1·2·3·4항에 보면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훈장, 표창을 받을 겁니다, 실제로 훈장, 표창을 명시는 하지 않았어도.

○**김병주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성일종** 차관님,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을 하는데 본보기라고 하는 모범적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령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거예요? 한기호 위원님 시행규칙상에서는 몇 가지 얘기는

하셨습니다. 4개 항을 놓기는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도 추상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게 참 애매모호한데,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훈장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걸로 딱 떨어지는데 시행령에서 이것을 담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모범이 통과가 되면. 그것 고민 좀 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뒤에 4개 항을 빼놓으셔서 좀 더 진전화시켜 놓고 구체화시킨 건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아주 객관성 있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장관의 표창 이상이라든지 훈장이라든지 뭐가 더 있어야 객관성을 더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여쭙보는 거거든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위원장님, 훈포장, 장관·대통령 표창은 사실은 이것보다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대단히 많이 받기 때문에.

○**소위원장 성일종** 물론이지요. 훈포장은 상급이니까……

○**국방부차관 박재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국가의 상훈 규정에 의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공적을 인정해서……

○**국방부차관 박재민**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9쪽에 아까 한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하고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한 현황이 5명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예를 들어 군 복무를 하면서 신체장애를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이 시행규칙에 따라서 본보기가 될 만한 이 1·2·3·4항에 채택이 돼서 신체장애인이 되신 분이 다섯 분밖에 안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한기호 위원님께서 개정을 해주시는 배경이 천안함, 당시에 신체장애는 입지 않았으나 혁혁한 공이 있고 위협을 무릅쓰고 이런 게 있다고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위가, 그런 경우가 분명히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정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임무를 했다, 희생을 감수하고 술선수범을 했더라는 것들이 한편으로 추상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게 추상적이었다면 앞에 그 다섯명 인원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이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더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저는 그래서 군에서 상을 줄 때 사단장상도 있고 군단장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훈장까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상을 줄 때 그 기준으로 격론 없이 하려면 그런 기준을 좀 더 삽입하면 더 명확하겠죠……

여기에 좀 추상적인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특혜가 있을 수도 있고 보는 주관성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상이라는 걸로 딱 갖다 대비를 시키면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국방부장관상 이상이다 그러면 국방부장관상 줄 때 그냥 ‘야, 너는 잘했으니까 국방부장관상 줄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분명히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했을 테니까 그걸 국가가 인정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를 봐서 상 같은 경우를 좀 담았으면 갑론을박이 없을 수 있는 더 좋은 법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보완을……

○한기호 위원 차관님, 이게 여기에다가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라고 이렇게 명시했지만 실제로 군무원으로 채용할 때 심의위원들이 심의하지 않습니까? 하지요, 당연히.

○국방부차관 박재민 지금 그래서 그 시행령에 저희가 발전을 또 시켜야 될 것이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하고 신체장애는 없지만 이렇게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행령에 넣으면서……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법이 되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것들을 시행령에 반영을 꼭 해 주십시오 하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그 시행령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요. 나는 이 법안소위 할 때 시행령까지 다 구상을 해 가지고 오서 가지고 이 법안에 동의를 해 주는 게 행정부가 맞다고 봐요. 여기 하면서 본 법안은 통과했는데 ‘시행령은 다음에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하는 것은 나는 행정부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보거든요. 동의를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런 준비가 돼서 이 법안에 대한 통과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요구하는 게 맞아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위원님……

○소위원장 성일종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이 법안은 통과를 시키더라도 최소한 ‘시행령을 언제까지 보완해서 보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요건은 저희가 아까 안건에도 시행령 초안 뒤에 마련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맡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셔서 갖고 저희가 시행령을 다 이렇게 가능한 한 만들어서 붙이고 있고, 이 건은 특히 시행규칙이 워낙 이렇게 엄격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로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 붙여 가지고……

○소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군에서 상 주실 때요—이 법안 만드셨으니까—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시행령에 담는 데 말씀을 주셨으면 하고.

○한기호 위원 상에 대해서는 사실 좀 넣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대부대 훈련을 하면 사단에 할당이 내려옵니다. 장관표창 하나, 그다음 의장표창 하나, 참모총장표창 둘 이런 식으로 할당이 내려와서 부대 안에서는 뭐라고 심의를 하나면 누가 정말 열심히 했느냐 하는 걸 보고 또 ‘누가 금년도에 못 받았어?’ 이렇게 해서 할당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일반 표창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것은.

제가 군 생활한 경험으로는, 아마 여기 김병주 위원님도 비슷할 텐데 표창으로 모든 기준을 삼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저도 한기호 위원님 말씀의 일반적인 취지는 동의하는데 대통령 부대 표창급 이상 정도는 그래도 저는…… 사실 군무원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은 중령급 이하에서 전역한 간부들이거든요. 대령급 이상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령급 이하에서 대통령 이상 표창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렵거든요, 심의도. 그런 인원들에게는 좀 해야 되고.

사실 군이 스스로 자승자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무원의 임무는,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군무원의 임무를 확인해 보면 대다수가 현역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경륜이 있는 장교나 간부 출신들이 잘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똑같이 규정, 평등하게 한다고 군무원을 뽑더라도 적재적소의 임무를 잘할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군에서 근무하고 군에서 모범적인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사람에게만 군무원을 뽑으면 훨씬 임무를 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군에서는 모든 특권을 없앤다고 군 출신 전역한 간부들에게 이런 기회를 잘 주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똑같이 뽑으니까 어떤 군무원들은 진짜 임무 수행을 못 해요. 그리고 또 연령이 보장되고. 그러니까 대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 간부들로 전역하는 인원들 중에서 군에서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것들 있으면 좀 반영을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표창은 저는 장관급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가는데 대통령표창 이상은 진짜로 엄격하게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정도는 인정을 해 줘도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차관님, 한기호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주신 말씀이, 전문가시잖아요. 현장에 계셨었고요. 그러니까 주신 말씀 참고해서 시행령에 이 상 부분을 고려해서 좀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박재민 위원장님, 제가 하여튼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방금 심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6항까지 2건의 법률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항 및 8항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선준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경 의원안, 권명호 의원안을 일괄해서 12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개정안 제2조는 정보보호의 개념에 ‘대비’, ‘대응’, ‘복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국방정보의 경우에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비’, ‘대응’, ‘복구’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21조에서는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와 관련해서…… 제1항이 되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상단의 왼쪽을 보시면 현행은 ‘침해대응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침해대응 및 복구체계’로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취지는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 침해에 대한 복구체계라는 의미인데 띄어쓰기가 ‘침해대응 및 복구체계’로 돼 있어서 침해대응과 복구체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과 같이 ‘침해 대응 및 복구 체계’로 해서 침해 대응 체계, 침해 복구 체계라는 의미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항 개정안은 현행의 ‘대비하기 위하여’를 ‘대비하고 침해된 국방정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로 수정하고 있는데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3항제4호를 신설해서 국방부장관의 시책 강구 대상에 개정안은 ‘침해된 국방정보 및 정보체계의 신속한 복구를’ 이렇게 해서 ‘정보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의 박스를 보시면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보체계’라는 용어 대신에 ‘국방정보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 있게 ‘정보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보고드리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권명호 의원안 제11조에서 현행 제11조는 제1항에서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군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그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운영, 지정, 취소 등의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3항을 신설해서 제2항에 따라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방위사업법 등 약 300개 법률에서 지정 취소 시에 청문 절차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법률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권명호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윤주경 의원안은 6개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문회 절차 시행일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윤주경 의원안의 6개월보다는 더 앞선 시행일을 공포 3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박재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전부 동의합니다.

○한기호 위원 차관님, 이렇게 ‘대비’, ‘대응’, ‘복구’ 개정을 하면 그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겨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위원님, 원래 저희가 하는 임무에 포함돼 있는 내용들인데요, 대비·대응·복구 계획이. 이것은 윤주경 의원님께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넣자라고 개정안을 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정보보호 관련해서 하는 행위들을, 활동들을 설명하러 갔었는데, 가서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법 조문에는 그런 대비·복구·대응이 빠져 있으니 그거를 개정하자’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그 일에 대한 것이 법에 없으니 넣는 것이다 그래서 국방부가 실제로 업무를 하는 데는 큰 변화가 없다 이 얘기세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또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차관님, 하나 여쭙봐요. 대비·대응·복구 개념

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국방의 모든 개념이다 포함……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건 뭐 있지요? 포함이 안 됐으면 안 할 거예요? 오히려 법률로 왜 자꾸 축소를 하려고 그러지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신 거예요……

○소위원장 성일종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방에 있어서 범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모든 범위를 다 망라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비·대응·복구 이것 말고 다른 건 안 할 겁니까?

○국방부차관 박재민 등에 들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등에도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12쪽에 현행법에도 ‘봉쇄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정안에도 ‘대비·대응·복구’가 들어갔고 또 ‘봉쇄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임무는 다 합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저는 아예 이런 법안을 만들어 놓는 게 공직자들이 일하는 데 더 허들이 될 수 있다……

모든 걸 총괄해서 다 해야지요. ‘등’ 자라고 해 가지고 다음에 등 자 해석하다가 문제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위원장님, 국방정보보호의 개념을 지금 ‘등’이라고 해 놓은 거고요. 국방정보화법을 만들어 놓은 취지는 뒤쪽 조항에…… 저희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 뭐 개인정보 요구를 한다든지 무슨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쪽 들어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이 여기에 명시된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없어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비·대응·복구를 굳이 안 넣는 것이 업무하는 데 더 편리하다 이런 것도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이게 정의거든요, 정의. 국방정보보호의 정의인데 정의라고 하는 것을 축소해서 잘못 세워 놔 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정보보호에 관련돼 가지고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 다 하도록 해야지 굳이 대비·대응·복구 같은 개념을 정립해 놓고 나머지는 등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한번 논의해 보시지요.

자꾸 법이, 의원들 욕심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자꾸 너무 많은 법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저는 법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 무조건 동의할……

전문위원님, 의견들 좀 주세요. 무조건 이것 막 내놓는 게 좋은 법안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수석전문위원 박선춘 법의 명확성도 필요하지만 이 조항 같은 경우는 정보보호의 대상이 기술의 발전이나 또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뒤에 등이라고 한 것 같고, 그래서 등이라고 해서 신축성 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글쎄요, 국방 분야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심장인데 모든 것을 다 통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굳이 이렇게 축소해 놓는 개념적 정의가 뭐가 필요할까,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다 통괄한다고 하면 되지. 앞으로 환경 변화도 그렇습니다. 정보보호 쪽이 어떻게 얼마만큼 진화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실무진, 어때세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박남희 정보화기획관입니다.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위원장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그때 저희가 가서 설명할 때 의원님께서 ‘대응·대비가 같이 들어가 있지만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복구나 이런 개념을 좀 더 그 법안에 넣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사실은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설명을 해 드렸고, 그런데 법에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넣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것에 저희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법안에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허들이 돼서 저희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활동들을 막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실무자 생각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활동을 제한시킬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아니, 대응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복구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굳이 법률에 넣는 이유가…… 법의 가벼움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법들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기 뭐 빠진 건 없나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여기 혹시 빠진 거 없어요? 등 자 들어갔으니깐 다 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박선춘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적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등이라고 한 것 같고요.

최근에 사이버 침해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침해의 첫 번째 타깃이 국회·국방부·청와대인데, 그래서 그런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대비·대응·복구 개념을 좀 강조하려고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대로 또 추가될 사항은 그 뒤에 등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괄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기호 위원 변화가 없다는데 뭐 특별히……

○소위원장 성일종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심사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부터 8항까지 2건의 법률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대식 위원 한 10분만 쉽시다.

○김병주 위원 예, 한 5분 쉬었다가 하시지요. 환기 좀 시키고.

○소위원장 성일종 예,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선춘 자료 20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한국국방연구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에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대체토론 때 안규백 위원께서 국방정보체계관리단이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21쪽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개정안은 5의2를 신설해서 목적 사업에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지원 및 관리’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21쪽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의 목적 규정상 연구원은 국방정책에 관한 연구·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방부가 운용 중인 153개의 모든 시스템과 향후 개발될 시스템까지 연구원이 모두 유지·보수 업무를 전담케 하는 것이 기관의 설립 목적 등에 충분히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역량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개정안의 법문을 보면 ‘관리’라는 용어가 사후적 관리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사전적 관리라는 의미로까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정보화전략계획의 경우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창의적이고 미래전략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국방연구원이 모든 ISP 수립에 대해서 관여·관리하게 될 때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 5의2 법문 앞에 ‘보안 유지가 필요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관리’라는 문구를 삭제해서 지원 업무에 한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박재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차관님, 이 문제가 지금 몇 년째 거론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국방위원회 18대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맞느냐 하는 얘기가 나온 게 우선 첫 번째 국방연구원의 설치 목적과 이 임무가 타당하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고 과거에도 이것 때문에 국방연구원에서 하면 안 된다 하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계속 있었잖아요. 이제 정리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당시에는 이걸 못 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이상 끈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국방연구원 자체가 본래 이런 임무를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23쪽 조직도를 보시면, KIDA의 조직도입니다. 원장 밑에 여러 가지 연구센터들이 있고 맨 오른쪽에 국방정보체계관리단이라는 게 붙어 있고요. 다음 장 인력 현황을 보시면 정규직, 무기계약직 해서 정원이 한 오백여 명 되는데 그중 정보체계관리단에 102명, 5명 해서 10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국방 분야의 자원 관리체계든 전장관리체계든 정보체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고 더구나 보안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공단이나 뭔가 특별한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리가 되어서 유지·보수를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생기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으나 공공기관 신설에 대한 관계 부처의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여차피 정보체계관리단이라는 조직이 KIDA 밑에 있으면서 지금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별도로 떼어 내지도 못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해 왔던 것이지요. 그걸 이제 정비를 하겠다는 게 저희 국방부의 지속적인 입장이고.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KIDA의 연구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으로 떼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으나 그게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을 저희가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한기호 위원** 보세요. 실제로 그러면 상급 기관,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체계관리단 그러면 기획조정부·행정지원부·지식정보실·대외협력실하고 무관하게 맞바로 원장님, 부원장님의 통제를 받는 하나의 조직이 되는데 원장님, 부원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위원님, 조직도에 기획조정부·행정지원부·지식정보실·대외협력실은 KIDA 전체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안보전략연구센터·군사발전연구센터도 기획조정부·행정지원부에서 지원들은 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안보전략·군사발전·국방인력연구·국방자원·전력투자분석 이런 것들은 다 연구 분야거든,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한기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관리 분야로서 영역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게 맞냐 하는 논의가 과거에도 계속되고, 이것을 별도로 구성해야지 여기에다가 넣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이 수차례에 걸쳐 논의됐었는데 이제 와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해 주세요’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싶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KIDA가 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 다시 한번 의아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업무 영역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지, 국방연구원하고 성격이요.

그래서 과거에도 차라리 별도로 외주를 주는 것이 어떠냐 하고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에 보 안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가 됐고……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밖에 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 적합하지 않은 조직이면서 놓을 곳이 없으니까 이곳에 놓은 건데 진짜 보낼 데가 그렇게 없어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위원님, 그러니까 보낸다는 것이 별도 조직으로 만들지 않는 한…… 잘 아시지만 예를 들어 국군 조직이 있고 행정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는 이렇게 2개가 섞여 있습니다. 국방부·방사청 같은 것은 정부 조직

인 것이고 나머지는 국군 조직이 됩니다. 국군 조직은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합참, 육군 각종 사단 같은 작전부대부터 모든 지원부대, 국통사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국방정보체계관리단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민간 인력에 의해서 업무를 계속 수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떼서 다른 데에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방법은 공공기관이 별도로 신설이 돼야 되는, 분리가 돼서 독립이 돼야 되는 그런 여건인데 그것을 저희가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기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통신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무선·유선, 하나의 소통하는 방법만 고려했지만 국군통신사 같은 경우에 통신이라는 개념 속에 하나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이게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국방과학연구원(KIDA)보다는 오히려 국군통신사가 적합한 조직 아니냐……

○**국방부차관 박재민**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군 조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신분 변환이라든지 국군의 정원이란지 이런 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비병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앞으로의 방향은 국군 정원은 조금 더 전투 분야에 모이면서 전투를 지원하는 이런 분야는 오히려 밖으로 아웃소싱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통사 밑에 이것을 보낸다는 것은 조금 방향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별도의 공공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관이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정보화기획관 박남희** 조금 실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만들어진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것을 독립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99년부터 만들어서 14년에 KIDA의 정식 편제 조직으로 들어 갔고 정보화사업은 그 뒤로 확대가 굉장히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지·보수의 일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조직에 대해서 여기에 두고 인력이나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기재부를 가면 ‘법적 근거가 없다’,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독립하는 것을 차치하고 현재 있는 것에서도 예산이나 인력 증원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저희하고 맞지가 않아서 기재부에서는 계속 저희한테 요구한 게 ‘법적 근거를 먼저 완비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정부안으로 낸 것에 KIDA 안에 유지·보수라는 일을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차관님이 대답한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앞으로 확대될 현상이 더 예상이 되니까 별도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현재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노력으로 법적 근거가 먼저 갖추어지고 그리고 나서 차후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KIDA의 성격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것이지.

○국방부정보화기획관 박남희 한 가지 부연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유지·보수라고 하면 앞에 어떤 기획하고 연구하고 신기술을 하는 것은 조금 떨어지고 개발 끝난 다음에 유지·보수하는 활동으로 이렇게 끊어졌는데 지금 AI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는 사실은 앞에 기획 단계로 피드백되는 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KIDA 안에 이 정보화를 연구하는 부서가 정식 조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과 이 조직이 협업하는 일들이 예전에는 정말 딱 끊어지듯이 일을 했다면 요즘은 협업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기도 조금 제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이라고 명시를 했고 그 밑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자원 및 관리 사업’…… 그러니까 사실은 행동으로 하는 것뿐이잖아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수립 지원’입니다.

전략계획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정보체계를 만들기 전에 ISP를 미리 만듭니다, 한 1~2년 별도의 선행연구 같은 개념으로. 그것을 만드는 것을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도 전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임무를 주고 해서 지금 정보화기획관이 말한 대로 과거와 같이 개발은 별도의 팀에서 해 놓고 ‘유지·보수만 해’ 하는, 흔히 생각하면 사무실과 가지고 전산 용품 같아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체계를 하고 또 성능개량 할 때는 어떤 의

견도 주고 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 같이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정보화기획관 박남희 위원님, 이번에 이렇게 입법으로 법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정원에 안 들어 있는 기재부의 활동을 통해서 정원으로도 반영을 시키고 예산도 조금 더 증액시키고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는 그런 비전을 가진 조직에 대한 검토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 가기 싫다고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다른 데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박남희 KIDA에서 떠나기 싫다?

○한기호 위원 예.

○국방부차관 박재민 위원님, 그런데 다른 데 어디를 말씀할, 국통사……

○한기호 위원 국통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연관이 되지 않느냐, KIDA보다는 차라리.

○국방부차관 박재민 위원님, 현재로서는 국군 통신사령부에서 전산 정보, 복잡한 인사 정보든 군수 정보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관여를 해서 어떤 의견을 주고 기획을 하고 할 그런 임무와 기능과 조직과 인원이 없습니다, 사실 임무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갖다가 놓는 것도 맞지 않고, 더 큰 문제는 그것은 국군 조직이기 때문에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부연 설명을 드리면, 24쪽에 보시면 예산 얘기가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국방정보 체계관리단 예산이 전부 250억인데 이 중에서 KIDA 예산으로 출연을 해 주는 것은 54억이고 나머지 200억은 사업비로 국정단하고 계약을 하 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 소요나 굉장히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기재부에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고도의 보안 유지가, 기밀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 업체에 유지·보수는 못하고 이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출연으로 바로 주자라고 해도 국방연구원법에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 준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개정을 해 와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안을 낸 겁니다.

KIDA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0억에 대한 것은 사업비로써 건건별로 계약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함이 또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차관님, 지금 여기 국방정보체계관리단에서 국방과 관련되는 모든 정보체계에 대해서 연구하겠다는 것이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유지·보수 업무와 ISP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유지·보수 업무하고…… 그러면 군 전체에 있는 모든 것들의 정보체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이 인원을 가지고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중에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것들, 전장 관리 체계 위주로 이쪽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군에서 정보시스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 하는 데가 없나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민간 업체들이 있지요, 민간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국정단이다 하는 것은……

○소위원장 성일종 민간 회사에서 하는데 여기로 와 가지고 관리하면서 여기에서 민간한테 다시 위탁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박남희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엄격하게 규정을 정해 놓은 게 50% 이상은 KIDA 인력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 용역을 써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조직이 없을 때는 전부 다 민간 업체에다 용역을 줬는데 그게 예산으로 개발비의 한 10%밖에 안 들어오니까 400억짜리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한 40억 이러면 우수한 기업들은 안 들어오고 작은 기업들이, 제가 예산 규모를 큰 것을 예를 들어서 그런데 40억 하면 4억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을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15년 전 그때부터는 이런 전담 기관을 지정해서 군의 큰 체계들, 전군 지원 체계나 또는 C4I 체계나 이런 것들은 KIDA가 중점적으로 50% 인력을 더 투입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청을 주는 행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박남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장비 시스템에 대한……

○국방부정보화기획관 박남희 하드웨어나 또는 소프트웨어 대한 유지·보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끝나고 나서. 인사 정보 체계다 그러면 인사 정보 체계는 일반 민간 회사에서 개발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유지·보수 단계로 넘어 갑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여기가 해야 되는 큰 당위성은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박남희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 단을 만들 때부터 있던 얘기가 군에 보안이 필요한, 더 강조되어야 될, 민간한테 다 쥐 버릴 수 없는 그런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업체를 매년 선정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불합리함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어서 전담 기관으로 저희가 운영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국방부차관 박재민 위원장님, 전장 관리 체계를 여기에서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군사비밀, 작전할 때 쓰는 전장 관리 체계들입니다.

○한기호 위원 한마디로 해서 워 게임(War Game) 하면 워 게임하는 프로그램하고 전부 다 개발돼 가지고 운용하는데 그것을 누군가 평상시에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훈련이 한 번 끝나면 보완을 해야 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계속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조직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과거부터 운용은 KIDA에서 조그마한 규모부터 시작했는데 자꾸 커진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KIDA가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게 벌써 한 10여 년 이상 논의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 정리해서 ‘KIDA에다 아주 해 주자’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KIDA 성격하고 전혀 안 맞는 별동대 같은 조직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를 자꾸 제기하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다. 왜 KIDA가 그것을 하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다른 데는 어디에도 줄 데가 없다. 특히 외주는 줄 수가 없다, 이게 보안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군에 있는 조직 속에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줄 것이냐 이 논의가 지금까지 수없이 되어 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정부안으로 KIDA에다 주자 하고 결론을 낸 것이지요.

○소위원장 성일종 예를 들어서 워 게임을 합참에서 한다고 그러면 합참 내에서 그것 다 해결해

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위 게임을 하는 시스템이 몇백억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예를 들어 미군과 정보를 연동하는 체계라든지 거기에 각군의 작전 상황을 해서 COP이라고 상황도를 만들어서 합참 의장부터 지휘관들이 작전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거든요. 그런 체계들은 민간 기업이 만드는 것 자체도 4~5년 동안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몇백억을 들어서 개발을 합니다. 그 유지·보수를 현역 공무원인 군인이나 군무원에게 하라는 것은 못 하는 일이고요.

전문 업체나 전문 기관, 전문가들이 있는 데서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민간 기업에 줄 수가 없는 게, 그 안에 내용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체계 개발할 때는 민간이 했다 치더라도 거기에 온갖 작전 계획 같은 것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에게 줄 수가 없으니 이런 특별한 조직이 지금까지 생겨서 이렇게 유지를 해 왔는데 법적 근거를……

그러니까 이 단은 별도 공공기관이어야 된다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것은 기관 신설 이런 것 때문에 안 됐던 것이고 지금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 자체를 외주 줄 수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면 국군·국방부 조직 안에서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 할 기관으로서 KIDA가 적합하냐 했을 때 국방부 얘기는 ‘다른 데는 줄 데도 없다. KIDA가 하던 거니까 KIDA에 주자’, 쉽게 이야기하면 결론은 이 얘기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거기에다가 KIDA가 꼭 못 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제가 드렸던 겁니다. 물론 연구하는 기관이기는 하고……

23쪽에 보시면 거기에 군사발전연구센터에 전장정보화연구실이라는 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원들이 약 20~30여 명 정도 있는데 국방부 전체 정보체계에 대해서 어떤 연구·분석적인 그런 지원을 하는 조직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업무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들 국정단의 컴퓨터 이런 쪽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 연구실도 지원을 받기도 하고 저희 국방부에서도 지원을 받기도 하고 해서 꼭 KIDA랑 안 맞더라도 규정하기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아니에요? 육해공군 다 있고 각 부대별로 이런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은 텐데……

○국방부차관 박재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다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KIDA의 본업보다 유지·보수팀이 더 커지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박남희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왜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박남희 왜냐하면 저희 훈령에 이게 민간 업체하고도 다 관련이 있고 그런 업무를 여기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개로 한정을 시켜 놨습니다.

그게 차관님이 보고드린 대로 C4I 체계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M&S라든지 위 게임 그리고 전군적으로 쓰고 있는 체계 이것들만 하고 있지 모든 체계를 할 수도 없고 이쪽에서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거기에 핵심이라고 하는 것만 가져왔다고 이해하면 돼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박남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그 핵심은 뭐예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박남희 그 뒤에 나열이 돼 있습니다, 25페이지에.

○한기호 위원 그래서 각군 본부에도 전산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산실에서도 각군에 해당되는 시스템은 거기에서 관리하고 프로그램도 관리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국방부 차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각군에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합참과 국방부 차원에서 유지·보수·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하느냐 문제인데 최종적으로 KIDA가 해야 되겠다고 국방부가 결론을 낸 거지요.

○소위원장 성일종 이 부분은 김병주 위원님과 한기호 위원님이 전문가시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KIDA에 줘서 하자고 하는 게 국방부안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나머지는 또 지금 하고 있는 상태로 그냥 외주 형태로 가든지 이런 건지……

이런 판단은 저희 같은 군을 잘 이해 못 하는

사람보다는 두 위원님께서 의견을 많이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기호 위원 하긴 해야 돼요, 업무가 KIDA에 가서 오랫동안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이의를 달 것은 없어요, 이것은 하긴 해야 되고.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주시지요.

○한기호 위원 과거에도 논의가 계속 되어 온 게 ‘KIDA가 왜 해?’ 이렇게 계속 논의가 돼 왔었지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아예 법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론을 내서 제가 봐서는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저도 정부 제출안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기구를 새로 분리해서 별도로 만드는 것도 사실 많은 인력이 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두느냐인데 제가 검토해 보면 연구기관에 주는 게 맞거든요. KIDA나 아니면 국방대나 또는 합참대나 국방부 예하의 어떤 국방부 조직에 교육사가 있으면 그런 데가 좋은데 그런 조직이 없고 하니까 일단은 법적인 근거를 여기에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확장이 된다 그러면 분리 문제는 또 나중에 별도로 갈 수 있는 거니까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차관님, KIDA에서 하면 더 들어가야 될 인원이나 예산 같은 것은 얼마지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위원장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던 것을, 여기 21쪽 보시면 한국국방연구원법 6조에 사업을 1호부터 5호까지 죽 나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5-1을 신설해서 이 임무를 주자라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지, 지금 당장 사람이 바뀐다거나 임무가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아니지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은 지금 국가적으로 너무 중요한 기관에 시스템을 갖고 와서 유지·보수는 이쪽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기호 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원장 성일종 하고 있는데 플러스알파 될 것은 없어요, 그러면?

○국방부차관 박재민 제가 조금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24쪽

에 예를 들어 국방정보체계관리단이 인력 107명을 데리고 251억여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출연금이 54억이고 나머지 196억은 건건별로 사업 계약을 해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 6조를 개정을 그렇게 해 주시면 196억 중의 상당 부분이 출연으로서,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매년 출연으로서 갈 수 있다는 업무 방식의 변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소위원장 성일종 인력 변화 없이, 조직 변화 없어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그다음에 정보화기획관 얘기는, 정보화기획관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향후에 우리 업무가 더 늘어나서 국방정보체계관리단이 이 업무를 더 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재부도 동의하고 국방부도 동의를 다 한다면 어떤 추가적인 인력 증원이나 예산 증원이 기재부랑 협의하기가 좀 더 쉽고 사업을 풀어 나가기 쉽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것은 미래 얘기고요, 우선은 법적 근거를 두고 지금 하는 방식 그대로 하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인력 변화는 하나도 없잖아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이 법안으로 인한 인력 변화는 없습니다. 근거만……

○김병주 위원 그리고 예산 변화도 없는 거고, 사실은?

○국방부차관 박재민 없습니다. 기존 사업대로 가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맞습니다.

○강대식 위원 차관님, 수정의견에 보면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153개의 국방정보시스템 중에, 뒤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18개입니까?

○국방부차관 박재민 17개입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면 17개만 전담을 하고 153개 중에 나머지는 다른 기관이나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한다, 이 말입니까?

○국방부차관 박재민 민간이 하거나 직접할 수도 있고, 전산원 같은 곳을 통해서 조그마한 체계들, 아주 작은 체계들은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요.

○강대식 위원 직접 하고?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강대식 위원 그러니까 이 17개가 굉장히 중요

한 부분……

○국방부차관 박재민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국방부차관 박재민 국정단에서 하고 있다……

○강대식 위원 하고 있다?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차관님, 이것 손보는 김에 앞으로 우리가 우주군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전략사령부, 새로운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 가 나온다고 했었을 때 그 또한 지금의 국가 시스템만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맞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그거 주겠다고 하는 항목도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우주사령부라든지 군에 필요한 중요 부서를 새로 만들어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것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느냐 이거지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5의2에 이렇게 들어가서 개정이 되면……

○소위원장 성일종 어디 있어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21쪽 수정의견에 ‘보안 유지가 필요한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지원’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현재 국방부가 153개의 정보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KIDA에서 하고 있는 게 17개입니다. 그 게 25쪽에 17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17개 목록이 3군 합동이거나 전장정보체계에서 중요하거나 복잡하거나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우주사령부가 만들어져서 또 우주작전 상황을 현시하는 캅(COP)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보안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조직에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근거는 된다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4성 장군 출신이니까,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병주 위원 예, 해야지요.

그러니까 저는 국방부하고 KIDA가, 사실 이 프로그램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위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것이 더 커져서 다른 데로 분리되든 안 되든 이것은 차후 문제고요.

○소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한기호 위원 제가 봐서는 이제는 좀 정리해서 정상화시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조직이 우리 프로그램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관리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간다 그러면 안 되고, 정상화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특별히 인원의 증감이나 이게 없다 하면 현 시스템으로, 국방부가 보고한 정부안대로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방부차관 박재민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더 이상 말씀……

○강대식 위원 잠깐만요.

차관님, 이 바운더리 안에서는 독립된 기구를 만들 수는 없어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그러니까 부설기관이라는 것을 별도로 해서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줄 수 있는데…… ADD도 지난번에 부설기관화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품원도? 그런 방안은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심사한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10항은 안규백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데, 방위산업의 날 지정 건이거든요.

○강대식 위원 위원장님, 11번까지 하십시오. 김진표 위원님 안까지 하십시오. 10번, 11번……

○소위원장 성일종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강대식 위원 크게 오래 걸릴 것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11번까지 하시지요, 밥 조금 늦게 먹더라도.

○강대식 위원 11번까지 하시지요.

○소위원장 성일종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선춘 28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17조의2를 신설해서 방위산업의 날 제정 및 행사 개최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매년 10월 11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 11일은 1952년 대한식 소총 시제품 여섯 정에 대한 시범사격회가 열렸던 날입니다.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방위산업 종사자의 헌신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념일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개정안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위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개최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항과 관련하여 현행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83개의 기념일 중에서 그 지원규정을 개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체계상 통일성을 고려해서 개최 및 지원의 직접적 규정을 두는 대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위산업의 날을 10월 11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 시행에 있어서 준비기간이 충분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부칙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박재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전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 이 건은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동의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10월 11일, 왜 이 날짜라고요? 왜 10월 11일 이 날짜로 정했느냐고요.

○수석전문위원 박선춘 보고드린 대로 1952년에 대한식 소총 여섯 정에 대한 시연회가 있어서 그 날을 정한 것으로……

○한기호 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방위사업청차장 서형진 방위사업청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952년 전쟁 중에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육군 조병창에서 대한식 소총을 시범사격한 날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최초의 무기체계라고 보고 민족의 절박함이 담겨 있는 연구개발의 결과물이라고 봐서 10월 11일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방사청은 언제 만들었어요, 창설일이?

○방위사업청차장 서형진 2006년 1월 1일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ADD는 언제 만들었어요?

○방위사업청차장 서형진 1970년 8월 6일 날 만들었습니다.

○한기호 위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날인데 10월 11일로 정한 자체에 대해서 52년도 그게 무슨 대단한 날이라고 그날을 가지고 정하느냐는 거지. 하자, 이거예요. 날짜도 좋다. 좋은데 왜 그 날짜냐? 수궁이 안 간다는 거지요, 그거 가지고는. 시험사격했다고 그 날짜로 정한다?

○방위사업청차장 서형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무기체계라는 것을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해서 시험사격한 날이라고 봐서……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든 날짜를 하든가, 새로운 무기 최고로 만들었으니까. 나는 그거 가지고 의미를, 방산의 날을 정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기념하는 날을 정하는데 10월 11일이라는 게 가치가 있느냐, 날짜에 대해서…… 별로 그것은, 우리 무기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한 번 쏘다,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10월 11일 이것도 틀림없이—차장님, 이런 얘기를 하긴 뭐하지만—안규백 의원님한테 부탁해서 입법발의를 했겠지. 그러면 날짜를 10월 11일이라는 날짜 외에 여러 가지 날짜를 놓고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 방사청에서 해 달라고 안 했는데 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날짜 몇 개나 놓고 검토하셨어요? 이것만 가지고 검토하지는 않았을 거야. 대답해 보세요.

○방위사업청차장 서형진 이 법안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말씀드리면 다른 법안들은 의원님께 가서 좀 부탁드리고 저희들 검토한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기호 위원 보세요. 10월 11일은 통상 언제나 하면 국정감사 하는 기간 중입니다, 매년 거의 빠짐없이. 지금까지도 방산업체들이 국감 중일 때 출두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ADEX를 핑계 대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날짜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야. 앞으로 국정감사 할 때 싸그리 빠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날짜가 의미 없다 이거야, 10월 11일이라는 날짜가. 날짜를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날짜를 놓고? 솔직히 10월 11일이면 국정감사 할 때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감사 하고 있는데 국방위원장도 없이 가서 이 날짜의 기념행사를 할 거예요?

날짜는 만드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날짜를 왜 이 날짜로 정했는지 지금 얘기하시는 그 논리 가지고는 타당성이 없단니까요. 뭐 미사일 쏜 날짜로 하든가, 해도 똑같은 거지.

○국방부차관 박재민 이것은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의견을 주시거나 아니면 다음번에……

○한기호 위원 아니, 방사청에서 날짜를 몇 개 놓고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박재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

○한기호 위원 안 하셨어요?

○방위사업청차장 서형진 예, 이 법안은 저희들이……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날짜를 다시 검토해야 돼.

○소위원장 성일종 지금 한기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타당하거든요. 그리고 이 날을 정하는 의미가 국민들한테 주는 울림이 있고 ‘저 날은 정말 지정을 할 만하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기호 위원 예.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차장님께서 가서 방위산업에 대한 의미 있는 날짜를 한번 토론하셔서 그 백 데이터를 좀 주시지요.

○방위사업청차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이 법은 토론을 여기서 종결하고요.

○한기호 위원 해 드리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날짜는 다시 한번 심층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서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박재민 저희가 다음번 소위 전까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의사일정 제10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선춘 자료 39쪽입니다.

39쪽의 개정안 제14조의2는 사업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 및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타당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14조의2제1항 본문은 ‘착수 이전에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시 시점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도록 ‘착수 이전’이라는 문구를 ‘사업의 착수 이전’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0쪽의 오른쪽 비고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14조의2제1항 각호는 전력지원체계사업, 무기체계 구매사업,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사업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사업타당성조사를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공백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단계에서 소요량, 성능, 단가 등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타당성조사 수행 시점에서 양산 비용에 대해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현재처럼 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 및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각각 수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40쪽의 좌측의 표를 보시면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와 양산 사업타당성조사 간의 변동률이 있습니다. 최대 70%까지 변동률이 발생을 하고 평균 22%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또한 안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의 규정은 제2조제5항이 아닌 제2조제5호이기 때문에 제2조제5호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의2제2항에서는 현재 사업타당성조사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총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안 제14조의2제3항에서도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따라서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제4항도 사업타당성조사의 대상 사업, 선정 기준, 조사 방법 및 절차와 수행주체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부칙에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위법령의 정비에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박재민 김진표 의원님께서 이 법안의 개정안을 내주시면서 양산 사타 때문에 전력화가 지연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양산 사타를 특별히 연구개발 사타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처랑 충분히 협의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주신 것처럼 실제 연구개발할 때의 비용과 양산 사타할 때의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는 측면도 있고 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양산 사타를 통합 수행하는 단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부처 간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그 외에 이렇게 제기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한기호 위원 양산 사타하고 연구개발 사타하고의 편차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해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일단 기간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 그 와중에 연구개발을 하면서 어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어서 뭔가를 대체했다거나 할 경우에 비용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으로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 사타에서 예산을 뽑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면 얼마가 나올 것이라든가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발을 3~4년 하고 양산할 단계가 되면 당연히 비용이 달라지는 측면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차장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서형진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총사업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한 20%를 넘어가게 큰 폭의 변동이 있는 것은 대부분 양산 소요 물량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연구개발할 당시에 소요를 결정했을 때하고 양산 들어갈 때의 기간이 변동하다 보면 전력화 물량이나 그 부대 같은 것들에 변경이 많이 생기면서 생기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여기 재정 차이를 보면 지상전술데이터링크, 차기소부대무전기, 81mm 박격포, 경기관총의 아주 심플한 것들은 예산이 줄고 그다음에 큰 거는 예산이 다 늘었어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서형진 예.

○한기호 위원 이것도 특이한 현상인데, 그건 왜 그래요?

○방위사업청차장 서형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크게 늘고 이런 것들은…… 여기 차륜형지휘소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물량 부분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소요 물량 감소 같은 것들이 있고요. 대부분은 연구개발할 때 연구개발 단가를 사전에 양산 단가로 예측을 하는데 그 단가에 대한 차이가 개발하면서 좀 늘어나고 줄어든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다른 이의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차관님, 연구개발 과정에서 사타하는 것을 양산할 때 하는 것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가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원래 김진표 의원님이 내 주신 안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개발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복잡한 무기체계는 한 3~4년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하고 나서 완성이 되고 나면 양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에서는 시제와 몇 개 시험 평가할 수 있는 한 5대 이 정도만 만듭니다. 그 연구개발을 4~5년 걸려서 한 다음에 평가가 다 끝나고 나면 양산을 앞으로 한 200대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양산에 대한 사타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양산 사타가 6개월, 8개월, 1년씩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개발을 다 해 놓고 쉬었다가 또 해야 되니까 방산업체도 라인 유지라든지 기술인력의 인건비도 1년 동안 나가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통합해 달라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이 사업 자체가 워낙 몇 조짜리 이런 큰 사업이다 보니까 기재부는 여전히 연구개발과 양산 사타는 별도로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기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한 번쯤 더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양쪽 제도에 장단점이 서로 명백하게 있지만, 우선은 김진표 의원님께서 그런 취지로 내주신 것은 저희가 100% 공감하고 굉장히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재부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병주 위원 지금 사실 무기체계가 우리 산업화 시대나 농업화 시대같이 변화의 속도가 느릴 때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투명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지금 기술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는데 이런 사타가 사업 시작할 때 하고 양산할 때 하다 보면, 이미 양산돼서 전력화됐을 때 무기는 구닥다리 무기가 돼 버리는 사례가 사실 너무 많아요.

특히 통신 계통에 있는 TICN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막 자랑해서 나온 것 보면 이미 버전이 한참 늦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시대 변화에 맞게 시스템이나 법이 정비돼야 되는 거고요, 특히 무기체계는 과학기술을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적극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들

이 안 계시면 방금 심사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장 대 식	기 동 민	김 병 기	김 병 주
김 진 표	성 일 종	한 기 호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 선 춘
전 문 위 원	조 문 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차 관	박 재 민			
정 보 화 기 획 관	박 남 희			
법 무 관 리 관	유 재 은			
보 건 복 지 관	박 길 성			
군 사 시 설 기 획 관	천 승 현			
방위사업청				
차 장	서 형 진			
국방기술보호국장	박 대 규			